



# 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**제목 도시관리계획(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고시**

1. 2016.2.3.자 제1차 성동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원안자문)와 관련됩니다.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31호(2008.7.10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82호(2011.7.7)로 변경결정 고시된 「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획지(SR-2-1)계획 변경 제안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고시코자 합니다.

= 아 래 =

**□ 도시관리계획(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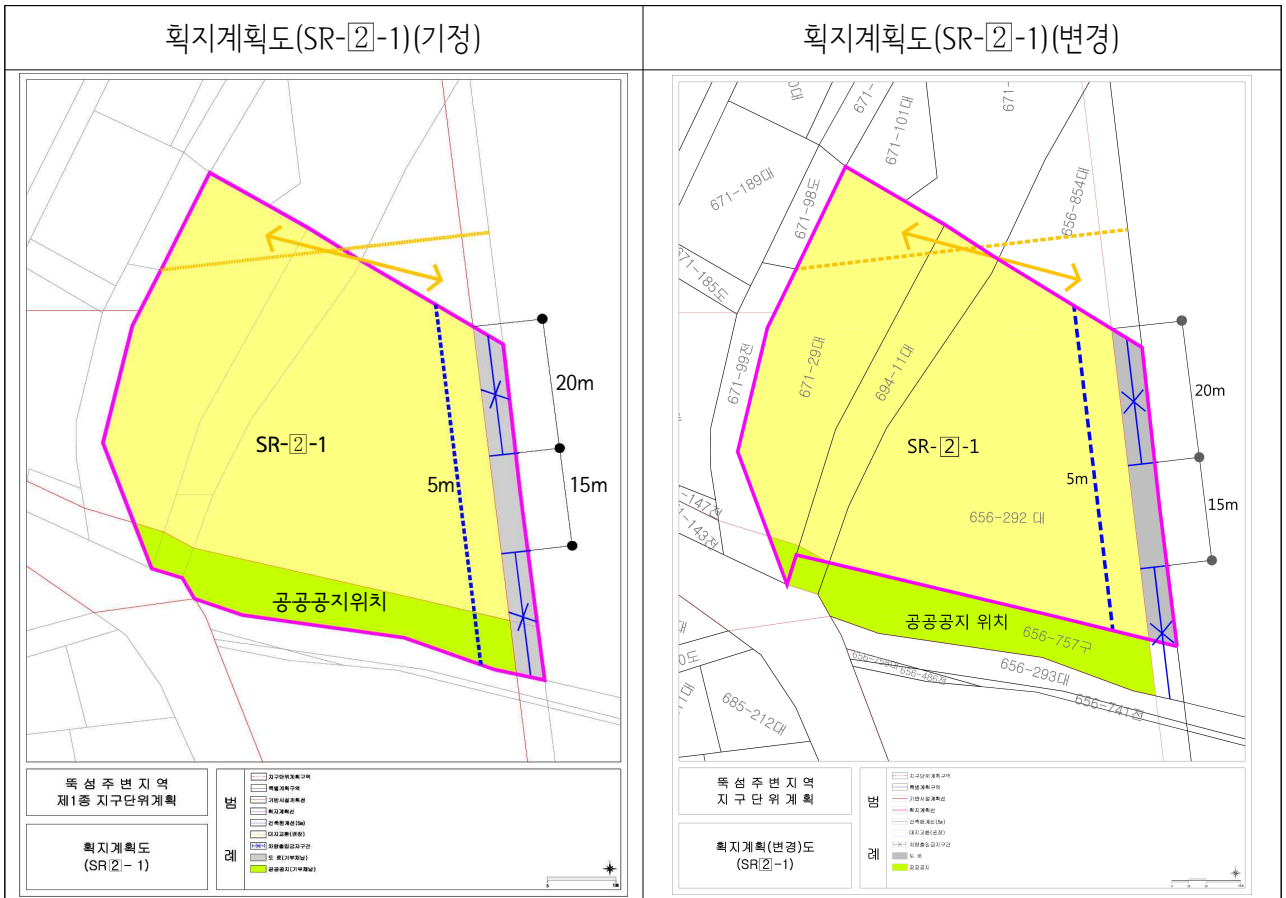
1)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 고	
			위 치(성수1가동)		면적(㎡)		
SR-2	SR-2	24,928	기정	2-1	656-292, 671-29, 694-3, 694-11, 656-757	3,318	· 공공공지/도로 조성후 기부채납 (면적 약356㎡이상/약206㎡이상)
			변경	2-1	656-292, 671-29, 694-11		

주)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2)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
· 획지면적의 변경 : 3,318㎡ → 2,853㎡ 감) 465㎡(14.0%)	· 재정비중인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(안)의 내용(공공공지 위치 지정 폐지하고 도로 결정 예정)을 반영하여 현행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656-757, 694-3번지를 획지에서 제척하고, 차량출입구를 왕십리로에서 이면도로로 변경



## 3)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4. 고시방법 : 시보게재

5. 고시일자 : 2016. 3.10.(목) 예정

6. 행정사항

- 시보게재의뢰 : 서울특별시(시민소통담당관)

- 변경결정통보 : 서울특별시(도시관리과), 성동구(건축과, 토지관리과, 성수1가2동장), 주민제안자

붙임 : ① 고시문(안) 1부.

② 지형도면 1부. 끝.

주무관

**장수진**

지구단위팀장

**김성**

도시계획과장

**지학주**

도시관리국장

03/07  
**윤호영**

협조자 주무관

**代이현미**

시행 도시계획과-1377 ( ) 접수 ( )

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<http://www.sd.go.kr>  
전화 02-2286-5561 / 전송 02-2286-5928 / [jinijang@sd.go.kr](mailto:jinijang@sd.go.kr) / 대시민공개  
궁금할 때, 불편할 때 국번없이 **120**으로!